

5. 建築許可制限 關聯 細部施行基準 示達

資料提供：建設部

1. 정부는 지난 6. 18 건축허가제한 일부 해제조치시 제한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행키로한 선별적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선별적 허용기준은 제한기간이 오래되어 민원이 큰 건축물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또한 허가면적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부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건축허가전 건축에관한심의등 관련법에 의한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한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92. 8월부터 건축을 허가하되, 착공시기를 3단계로 조정하였다.

- 건축심의후 1년('91. 6. 30이전)이상 경과된 경우 : 8. 1이후 착공
- 건축심의후 6월('91. 12. 31이전)이상 경과된 경우 : 10. 1이후 착공
- 건축심의후 6월('92. 6. 30이전)미만 경과된 경우 : 11. 1이후 착공

둘째, 특히 공익상 시급을 요하는 다음 건축물도 포함시켰다.

- 낙후된 농·어촌의 개발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과 도민체전 개최지의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자가 분양하고 건축시기가 지정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자본시장 개방정책에 따른 금융·증권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

셋째, 건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91. 6. 30이전에 허가받아 공사중인

건축물)로서 제한대상용도의 연면적 20%이내의 증축과 면적증가가 없는 단순한 용도변경도 허용하였다.

3. 금번 제한대상에서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허가예상물량은 하반기 건축허가량의 약 10% (4,000천㎡)에 해당될 것으로 이는 건자재수급에 별다른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 시멘트의 추가소요량이 258천톤에 달하나, 3단계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여 하반기 추가소요량을 63천톤으로 조정하였으며
- 제한조치가 완료된후 그동안 누적된 건축허가 대기물량에 의하여 '93. 1이후 건축허가의 집중으로 예상되는 건설경기과열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